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다문화학생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등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72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검토의견	2
-----------------	---

1. 다문화학생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등	2
-----------------------------	---

※ 참고자료

1. 이주배경학생의 유형 및 특성	8
--------------------------	---

2.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 체계	9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1. 6.
3. 회 부 일 : 2026. 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문화학생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당수가 입국 초기 언어·문화 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자퇴율이 일반 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학적이 등록된 이후에야 학교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여,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은 지원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제공받아 다문화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감은 이를 활용하여 해당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관련 기관 정보를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입학 전 단계부터 학업 중단과 부적응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6항 등 신설).

Ⅲ. 검토의견

1. 다문화학생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 등으로부터 이주배경학생의 정보를 제공받아 다문화학생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학교 입학과 관련된 초기 교육 및 학교 적응 지원 등에 관하여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6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 ⑤ (생략) <u><신설></u>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문화학생등의 성명, 성별, 국적, 거주지 등 이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한정하여 다문화학생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
<u><신설></u>	<u>⑦ 제6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⑧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공 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다문화학생등</u>

이주배경학생 수는 2012년 46,954명(전체 학생의 0.7%)에서 2025년 202,208명(4%)으로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기본통계조사 실시 이후 현재까지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외국인가정 자녀 및 중도입국 유형 학생 수 증가가 두드러지며,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 비례하여 교과수업,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어려움이 나타나는 실정임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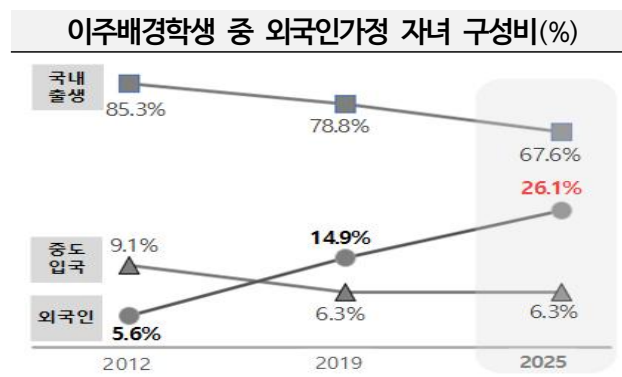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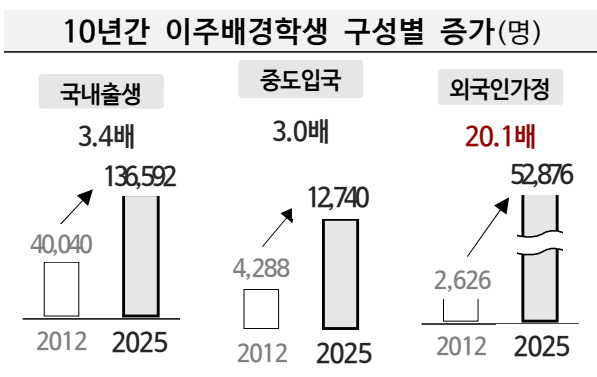
< 연도별 이주배경학생 현황 >

(단위: 명)

연도	전체	내국인		외국인
		국내출생	중도입국	
2025년	202,208	136,592 (67.6%)	12,740 (6.3%)	52,876 (26.1%)
2024년	193,814	134,817 (69.6%)	11,987 (6.2%)	47,010 (24.2%)
2023년	181,178	129,910 (71.7%)	10,896 (6.0%)	40,372 (22.3%)
(중 략)				
2012	46,954	40,040 (85.3%)	4,288 (9.1%)	2,626 (5.6%)

자료: 교육기본통계(매년 4.1. 기준)

< 이주배경학생 구성 현황 >



자료: 교육부

1)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2) 한국교육개발원,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체계로는 한국어학급, 한국어 예비과정 등이 운영 중이나³⁾, 관련 정보가 주로 학적 등록 이후 학교를 중심으로 안내되고, 지자체·법무부 등을 통한 홍보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전달 효과는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개정안은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령기 이주배경학생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무부장관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다문화학생지원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한국어교육 특별학급 이용 등 초기 교육·학교 적응 지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밖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입학 전부터 한국어 교육 및 적응 프로그램 정보를 직접 안내함으로써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학업중단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주배경학생 규모, 분포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학교급과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다문화교육 정책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어학급’은 학교 내에 한국어 교육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이를 개설하여 한국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한국어 예비과정’은 학교 밖에서 운영기관 위탁 등을 통해 지역 거점으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임. 상세한 내용은 ‘참고자료2: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 체계’ 참조.

□ 첫째, 개정안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재 교육부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생의 학적 등 학생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법무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에서 외국 국적 아동·청소년의 국적, 거주지, 입국시기 등 정보를 관리 중이며, 성평등가족부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에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비용과 인력, 보안 관리 등에서 행정적 중복 투자 및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둘째, 이주배경학생 지원정책이 여러 정부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며, 이주배경학생의 취학 통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⁴⁾. 이처럼 다양한 공공 부문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들 간의 연계 방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셋째, 시스템을 통한 통지 내용으로 규정된 ‘한국어교육 특별학급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읍·면·동의 장이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고, 제17조에 따라 읍·면·동의 장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용'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4항에 근거한 한국어교육 특별학급은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과정으로, 학교 밖의 이주배경학생이 이를 인지하더라도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지원 대상으로 설정된 집단의 특성과 제도 운용 간의 정합성 검토가 요구됨.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우리부는 이주배경학생이 입국 초기에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여 중도입국·난민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공교육 진입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있고, 한국 교육제도와 공교육 진입 절차 및 방법 안내 자료를 다국어(15개 언어)로 번역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학교 입학 전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있음 * 출입국관리청, 가족센터, 대사관 등 417개 기관 ** 학교 시설 탐방, 학교 규칙 안내, 또래 활동 등 - 다만, 교육부장관이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것은 예산 및 인력 운용 등에 있어 비효율적이며, 현재 아동에 대한 취학 안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에게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입학 등을 안내하도록 법제화 하는 것은 교육감 소관 사무와도 맞지 않아, 관련 부처 및 기관, 교육청·학교 등 교육 현장,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선행될 필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취학아동명부 작성 및 통지
○ 성평등가족부: 신중검토 - 성평등부 소관 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 내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서비스 이용실적 자료로 법 개정 실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대구 교육청: 신중검토 -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법률 시행의 주체에 대해 신중 검토 필요 ※ 현재 취학 통보 등의 주체는 지자체

문 의 처

02)6788-5184

참 고 1

이주배경학생의 유형 및 특성⁵⁾

구분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국내출생	중도입국(해외출생후)		중도입국	국내출생
배경	부모	한국인-외국인	한국인-외국인	한국인-외국인(재혼**)	외국인-외국인	
	출생	한국	외국		외국	한국
국적		내국인	내국인 (결혼이후생)	외국인 (결혼이전생)	외국인	외국인
한국어 역량		○ (대체로 높음)	△ / X (입국시점따라 다름)	X (대체로 낮음)	X (대체로 낮음)	△ (한국어역량 보유 경우 有)
체류 자격		내국인으로서 체류에 문제없음			- 방문동거 비자(F-1) - 입양 시 국적 취득 - 체류비자 다양*** - 비자별 체류·취업 큰 차이	
특성		- 한국인 정체성 높음 - 통합교육 선호 - 일부 다문화가정임을 노출하기 꺼리는 경향 - 생활 만족도 낮은 편 - 새로운 가족, 문화 등으로 스트레스 높음, 차별경험 높음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특성 - 불법체류 등 정주여건이 불안정한 경우 있음	

* 재외동포(중국 동포, 고려인) 난민 포함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 후 본국에서 기존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

*** (예) 영주(F-5), 재외동포(F-4), 동반(F-3), 방문취업(H-2) 등 / 일부는 난민, 불법체류

※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모두 한국에 계속 머물며 한국국적을 취득하겠다는 비중이 높음**

△ 중도입국 [한국정주(63%), 국적취득 의사(57.4%)] △외국인 [한국정주(국내출생 67.5%, 해외출생 57.9%), 국적취득 의사(국내출생 46.8%, 해외출생 32.4%)] (2021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5) 자료: 관계부처 합동,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참 고 2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 체계⁶⁾

교내	교외	온라인
한국어학급	한국어 예비과정	진단·보정 시스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모두의 한국어(KERIS)

□ 교내 한국어교육 지원

- **(한국어학급)** 입국 초기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한국어교육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한국어학급을 개설하여 한국어교육과정 운영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역다문화교육센터는 관내 한국어학급 미설치학교의 한국어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어 프로그램 제공

□ 교외 한국어교육 지원

- **(한국어 예비과정)**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한국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 운영
 - 교육청 협약 및 운영기관*이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원적학급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탁받아 한국어 집중 교육(3개월~1년) 실시
- * 지역 대학, 복지 시설 등 우수한 지역 자원과 연계 장려 ('24년, 29개)

□ 온라인 한국어교육 지원

- **(진단·보정 시스템)** 이주배경학생의 초기 한국어 능력을 진단하고 학습자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 학습자료 제공
-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진단부터 맞춤형 보정·관리까지 온라인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개발 ‘모두의 한국어’ 24년 3월 정식 개통

6) 자료: 관계부처 합동,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